

16. 대학원과정 학위논문

★ 논문제출 자격시험

석사,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전에 논문작성 및 제출이 가능한 정도의 학업능력과 성과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
• 논문제출 자격시험의 종류와 기준

- 논문제출 자격시험의 응시대상, 자격, 절차, 시험과목, 평가기준 및 면제기준은 대학원별, 학과별, 학위과정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과사무실에 확인해야 합니다.

★ 학위청구논문 지도

석사,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,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 시 당연직 심사위원이 됩니다.

•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선정

- 소속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의 의사, 전공 및 교수의 수업분담을 참작하여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가 정하게 됩니다.
- 다만,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명예교원, 교내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.
- 논문 지도교수 선정 시기, 지도교수 1인당 학생 수 등은 학과장이 정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과에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★ 학위청구논문 심사

대학원 학위과정에서의 학위청구논문심사는 수준 높은 논문의 배출을 위해 예비심사와 (본)심사를 실시하며 예비심사가 필수인 학과는 예비심사에 합격해야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심사위원 구성

- 석사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: 3인 이상
-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: 3인 이상
- 박사학위(석박사통합과정 포함)청구논문 예비심사: 3인 이상
- 박사학위(석박사통합과정 포함)청구논문 (본)심사: 5인 이상

•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, (본)심사 청구 학기

- 예비심사와 (본)심사를 동일한 학기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.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에 합격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
• 일반·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자격

- 공통사항: 수료에 필요한 학기(인정학기 포함) 등록
- 일반대학원: 수료학점(선수학점 포함, 박사과정은 33학점이상)을 취득하여 그 평균성적이 3.0이상이고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예비심사 합격(면제)
 - ※ 다만,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심사신청 수료학점 기준을 완화한 대학도 있으므로 소속 대학행정실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전문대학원: 소정의 학점(선수학점 포함, 학장이 내규로 정함)을 취득하여 그 평균성적이 3.0이상(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2.3이상)이고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예비심사 합격(면제)
 - ※ 다만,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심사신청 수료학점 기준을 완화한 대학도 있으므로 소속 대학행정실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일반·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추가 사항 :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 1편(공동연구발표 논문도 포함) 이상을 발표(논문게재증명서 포함)
- 다만, 각 대학별 대학내규로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

- 각 특수대학원별 논문심사 절차 및 합격판정, 학위논문제작, 학위논문 제출면제 등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확인해야 합니다.

* 학위청구논문 제출

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자는 학사일정에 정한 기한 내에 학위논문(전자 파일 및 인쇄물 최종본 모두)을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학위수여를 유예합니다.

• 학위논문 제출 기한

- 전자파일 제출 기한: (1학기) 2019. 7. 11.(목)
(2학기) 2020. 1. 9.(목)
- 인쇄본 제출 기한 : (1학기) 2019. 7. 19.(금)
(2학기) 2020. 1. 17.(금)

• 학위수여 유예 및 학위논문 합격 취소

-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하고도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 내에 학위논문 완성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위수여가 유예되며, 학위수여가 유예된 논문합격자가 다음 학기 제출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였을 때 제출학기 졸업일에 학위를 수여합니다. 만약, 이 기한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학기 논문심사 합격을 취소하므로, 이후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학위논문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.

